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

2012. 9. 1. 제정
2015. 3. 1. 일부개정
2019. 3. 1. 일부개정
2019. 7. 1. 일부개정
<학생지원부>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려대학교 학칙」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때 그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학생(학부생 및 대학원생)의 징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학업성적, 휴학, 복학, 미등록, 출결상황 등 교무행정상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 (징계권자와 징계의 목적) ① 학생에 대한 징계권은 총장에게 있다.

② 총장은 징계 절차의 진행과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대상 학생이 학교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 (조사권자) ① 학생처장은 제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학생처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5조 (비공개와 비밀유지)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조사 및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생의 징계에 관한 조사 및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 (피해자·신고자 등의 보호) ① 학교는 징계 대상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이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학교는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징계의 사유와 종류 등

제7조 (징계사유)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.

1. 시험 및 각종 제출물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학생
2.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
3. 학교 관련 시설에 무단침입을 하거나 무단점거를 한 학생
4. 학교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반출한 학생
5. 사회규범상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
6. 흉기·마약 등을 소지·사용한 학생
7. 학교의 통신망·데이터·소프트웨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.
8. 각종 제 증명서 및 문서를 위조·변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
9. 「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징계 요청의 대상이 된 학생

10.「고려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에 의하여 징계 요청의 대상이 된 학생
11. 학칙 등 학교규정을 위반한 학생
12.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

② 제1항의 행위를 교사·방조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학생도 제1항의 행위를 한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다.

제8조 (징계의 종류)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근신
2. 정학
3. 퇴학

제9조 (근신) ① 근신이란 잘못된 행동을 확인시켜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도록 함으로써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.

② 근신의 기간은 7일 이상 1개월 미만으로 한다.

③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

④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처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근신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학 처분을 할 수 있다.

⑤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기간 동안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⑥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과(부)장의 특별지도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0조 (정학) ① 정학은 기간을 정한 유기정학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정학으로 구별된다.

② 정학의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.

③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이 해제될 때까지 수업을 포함하여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는다.

④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처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정학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.

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제9조제5항 내지 6항을 준용한다.

제11조 (무기정학의 해제) ①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부장에게 무기정학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신청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반성 사실이 현저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.

1. 무기정학 처분 해제 신청서([별지서식11: 무기정학 처분 해제 신청서] 참조)
2. 특별지도 결과보고서([별지서식 10: 특별지도 결과보고서] 참조)
3. 무기정학 처분 해제 의견서([별지서식 12: 무기정학 처분 해제 의견서] 참조)

② 제1항제1호의 무기정학 처분 해제 신청서는 학생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지도 결과보고서 및 무기정학 처분 해제 의견서는 지도교수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도교수가 이를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과(부)장이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③ 해당 학생이 속한 대학(원)장 또는 학부장은 제27조제1항의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정학 처분 해제 건의서 및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상벌위원회에 무기정학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([별지서식 13: 무기정학 처분 해제 건의서] 참조).

④ 학생상벌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, 학교에 대한 현저한 기여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총장에게 무기정학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([별지서식 14: 무기정학 처분 해제(신청해제) 제안서] 참조).

⑤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생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총장에게 무기정학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([별지서식 15: 무기정학 처분 해제(직권해제) 제안서] 참조).

⑥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해제사유가 현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해제

신청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지도교수 등 교원에게 반복적으로 무기정학의 해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무기정학 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 (퇴학)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.

제13조 (퇴학 후의 재입학) ① 퇴학 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자격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제의에 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다.

1. 퇴학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생
2. 퇴학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생
3. 퇴학 처분의 사유가 폭행이고 그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생
4. 퇴학 처분의 사유가 성희롱·성폭력이고 그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생
5. 퇴학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학생

③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기산점은 퇴학 처분일과 법원 판결의 확정일 중 학생에게 유리한 날짜로 한다.

④ 제11조제5항은 재입학 허가신청을 하는 학생에 준용한다.

제14조 (봉사명령) ①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고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생상벌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처분 대신 봉사명령을 부과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징계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봉사명령의 종류·시간·방법 등을 정한다.

③ 봉사명령을 성실하고 적절하게 이행한 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않는다.

제15조 (부가조치) ① 총장은 제8조의 징계에 부가하여 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. 이 경우에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②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교육의 이수, 상담 또는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③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 자체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다.

제16조 (학적부 기재) ① 제8조가 정하는 징계 처분의 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.

②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학교 발전에 현저하게 공을 세운 경우에 총장은 그 사실을 징계 처분 기록과 연계하여 학적부에 기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
제3장 징계 절차와 학생상벌위원회

제17조 (징계의 발의) ① 제7조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 절차의 진행을 발의할 수 있다.

1. 학생징계 발의서([별지서식 1: 학생징계 발의서(I)] 참조)
2. 지도교수의 의견서
3. 징계 대상 학생의 진술서
4. 사건 경위서
5. 그 밖에 징계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

② 징계 대상 학생이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술서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과(부)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8조 (학생상벌위원회의 권한)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학생상벌위원회를 둔다.

제19조 (학생상벌위원회의 구성과 간사) ① 학생상벌위원회는 당연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자격은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학생상벌위원회의 당연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무부총장
2. 학생처장
3. 학생상담센터장

④ 교무부총장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 외에 직원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.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,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⑥ 위원장은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학생상벌위원회에 소환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및 간사의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이 재임명한다.

제20조 (학생에 대한 통지 및 학생의 의견진술) ①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생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학생은 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구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생의 출석 예정일 10일 전까지 학생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([별지서식 3: 출석통지서(I)] 참조). 통지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으로 하며, 통지에 이 규정을 첨부한다.

③ 학생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출석통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④ 학생이 출석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학생으로 하여금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([별지서식 5: 진술권 포기서(I)] 참조). 이때에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⑤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⑥ 학생이 국가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·연행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 소정의 기간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 외의 피해자, 관계인, 전문가, 지도교수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21조 (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) ① 학생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그러나 퇴학 처분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징계의 심의에 있어서 학생의 평소 품행, 학업성적,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([별지서식 7: 학생상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] 참조).

제22조 (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기한) ①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생처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 절차의 진행을 발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.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0일을 한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검찰·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·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제1항의 기한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

제23조 (징계 처분의 통지) ① 총장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고 이를 징계 대상 학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([별지서식 9: 징계처분 통지서] 참조).

② 총장은 해당 학생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부장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한다.

제24조 (징계 효력의 발생) ① 징계처분의 효력은 해당 학생에게 징계처분이 통지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의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25조 (재심의) ① 제23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
2. 징계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

② 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학생상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다. 다만, 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여부에 관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먼저 학생상벌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재심의가 진행되는 때에는 총장은 종전의 학생상벌위원회 재적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의 임시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여 학생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도록 한다. 이 경우에 제1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재심의는 총장의 재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제22조제2항, 제23조 내지 제24조를 준용한다.

제4장 징계 사무의 위임

제26조 (위임 사유)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 대상 학생의 소속 대학(원)장 또는 학부장에게 징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1. 징계 대상 행위가 해당 학생의 소속 대학(원) 또는 학부의 교육·행사 중에 발생한 경우
2. 그 밖에 대학(원) 또는 학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27조 (상벌위원회의 구성) ① 제26조의 경우에는 대학(원)장 또는 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그가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.

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대학(원) 또는 학부 소속 교수가 아닌 교수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28조 (준용 등) ① 제27조제1항의 상벌위원회의 사무에 대해서는 학생상벌위원회에 관한 제17조, 제19조제2항, 제19조제5항, 제20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([별지서식 4: 출석통지서(II)], [별지서식 6: 진술권 포기서(II)], [별지서식 8: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] 참조).

② 제17조가 정하는 학생처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교수가 담당한다([별지서식 2: 학

생징계 발의서(II)] 참조).

1. 대학(원)의 경우에는 부학(원)장 또는 대학(원)장이 임명한 교수
2. 학부의 경우에는 학부장이 임명한 교수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처장은 조사권을 계속 보유하며 제27조 제1항의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해서는 「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이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본다.
②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「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」을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해서는「성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이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본다(2015년 1월 16일 신규 제정)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[별지서식 1] 학생징계 발의서(I)

학생징계 발의서(I)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17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징계사유</td><td colspan="7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>별첨자료목록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위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학생처장 직인

고려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2] 학생징계 발의서(II)

학생징계 발의서(II)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7조 등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징계사유</td><td colspan="7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>별첨자료목록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위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_____ 대학(원)/학부 _____ 인

_____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3] 출석통지서(I)

출석통지서(I)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0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출석이유</td><td colspan="7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첨 부 문 서</td><td colspan="6">고려대학교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출석일시</td><td colspan="6">년 월 일 시 분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출석장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유의사항</td><td colspan="7">1. 고려대학교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은 학생에게 학생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구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동봉하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4. 진술권포기서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으로 년 월 일까지 학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고려대학교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
학생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 직인

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4] 출석통지서(II)

출석통지서(II)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7조 등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출석이유</td><td colspan="7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첨 부 문 서</td><td colspan="6">고려대학교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출석일시</td><td colspan="6">년 월 일 시 분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출석장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유의사항</td><td colspan="7">1. 고려대학교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은 학생에게 학생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구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동봉하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4. 진술권포기서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으로 년 월 일까지 학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</td></tr>
</table>

고려대학교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0조, 제25조, 제27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_____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_____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 위원장 직인

_____ **귀하**

[별지서식 5] 진술권 포기서(I)

진술권 포기서(I)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0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진술권 포기의 사유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9">저는 고려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습니다.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.

년 월 일

위 학생 _____ 인

고려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6] 진술권 포기서(II)

진술권 포기서(II)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7조 등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진술권 포기의 사유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9">저는 고려대학교 _____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로부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습니다.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.

년 월 일

위 학생 _____ 인

고려대학교 _____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7] 학생상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

학생상벌위원회
심의 결과보고서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1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봉사명령
또는
징계의
종류</td><td colspan="2">봉사명령 ()
근 신 ()
유기정학 ()
무기정학 ()
퇴 학 ()</td><td>징계 처분
결 정 일

년 월 일</td><td>징계의
기 간</td><td colspan="3">년 월 일
~
년 월 일</td></tr>
<tr><td>부가처분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이 유</td><td colspan="6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>별첨
자료
목록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/table>

학생상벌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 직인

고려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서식 8]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

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
심의 결과보고서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7조 등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
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봉사명령
또는
징계의
종류</td><td colspan="2">봉사명령 ()
근 신 ()
유기정학 ()
무기정학 ()
퇴 학 ()</td><td>징계 처분
결 정 일

년 월 일</td><td>징계의
기 간</td><td colspan="3">년 월 일
~
년 월 일</td></tr>
<tr><td>부가처분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이 유</td><td colspan="6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>별첨
자료
목록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/table>

_____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.

년 월 일

_____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 위원장 직인

고려대학교 총장 귀하

[별지서식 9] 징계처분 통지서

징계처분 통지서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23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처분의 내용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 유</td><td colspan="6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고려대학교는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위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 위 학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기에 이에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총장 직인

_____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10] 특별지도 결과보고서

특별지도 결과 보고서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11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징계의 종 류</td><td>근 신 ()
유기정학 ()
무기정학 ()</td><td>징계 처분 결 정 일
년 월 일</td><td>징계의 기 간</td><td colspan="3">년 월 일
~
년 월 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특별지도 사 항</td><td colspan="6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>별첨 자료 목록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위와 같이 특별지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위 학생의 지도교수 인
(소속: / 직위:)

고려대학교 _____대학(원)/학부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11] 무기정학 처분 해제 신청서

무기정학 처분 해제 신청서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11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징계 처분 이후의 경과 및 활동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별첨 자료 목록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무기정학 처분 해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위 학생 인

고려대학교 _____대학(원)/학부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12] 무기정학 처분 해제 의견서

무기정학 처분 해제 의견서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11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징계의 종 류</td><td>무기정학</td><td>징계 처분 결 정 일
년 월 일</td><td>징계의 기 간</td><td colspan="2">년 월 일
~
년 월 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무기정학 처분 해제 사유</td><td colspan="5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별첨 자료 목록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위와 같이 무기정학 해제를 건의 드립니다.

년 월 일

위 학생의 지도교수 인
(소속: / 직위:)

고려대학교 _____대학(원)/학부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13] 무기정학 처분 해제 건의서

무기정학 처분 해제 건의서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11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징계의 종 류</td><td>무기정학</td><td>징계 처분 결 정 일
년 월 일</td><td>징계의 기 간</td><td colspan="3">년 월 일
~
년 월 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무기정학 처분 해제 사유</td><td colspan="6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>별첨 자료 목록</td><td colspan="7">1. 무기정학 처분 해제 신청서
2. 특별지도 결과보고서
3. 무기정학 처분 해제 의견서
4.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_____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위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 해제를 건의 드립니다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_____대학(원)/학부장 직인

고려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14] 무기정학 처분 해제(신청해제) 제안서

무기정학 처분 해제(신청해제) 제안서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11조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징계의 종 류</td><td>무기정학</td><td>징계 처분 결 정 일
년 월 일</td><td>징계의 기 간</td><td colspan="3">년 월 일
~
년 월 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무기정학 처분 해제 사유</td><td colspan="6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>별첨 자료 목록</td><td colspan="7">1. 무기정학 처분 해제 신청서
2. 특별지도 결과보고서
3. 무기정학 처분 해제 의견서
4. 대학(원)/학부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
5. 무기정학 처분 해제 제안서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학생상벌위원회는 심의를 거쳐
위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 해제를 제안 드립니다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 직인

고려대학교 총장 귀하</td></tr>
</table>

[별지서식 15] 무기정학 처분 해제(직권해제) 제안서

무기정학 처분 해제(직권해제) 제안서

근거: 「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제4항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대학(원)·학부/학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년</td><td></td><td>학번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징계의 종 류</td><td>무기정학</td><td>징계 처분 결 정 일
년 월 일</td><td>징계의 기 간</td><td colspan="3">년 월 일
~
년 월 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무기정학 처분 해제 사유</td><td colspan="6">☞ 지면이 모자라는 경우 별지 사용</td></tr>
<tr><td>별첨 자료 목록</td><td colspan="7">1. 특별지도 결과보고서</td></tr>
</table>

학생상벌위원회는 심의를 거쳐
위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 해제를 제안 드립니다.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 직인

고려대학교 총장 귀하